

---

# 제11차 농어업분과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1. 개요

- **일시/장소** : 2021. 12. 15.(수) 14:00 ~ 17:00 / 대회의실/ 대면 및 화상
- **참석인원** : 21명
  - (농어업분과위원) 19명 중 16명 참석
    - \* 불참(3) : 박일진, 서용석, 정연근 위원
  - (사무국) 박성우 사무부국장, 손영준 팀장의 3명

## 2. 회의 결과

- (현황보고)
  - 농어업분과 전차(10차) 회의결과보고
  - 제11차 농특위 본 위원회 결과보고
  - 각 소분과 및 TF 추진현황 보고
- **본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 (안건1)농지 이용과 보전 관련 제도개선 방안
    - ⇒ 의견 반영 및 보완하여 심의안건 상정
  - (안건2)농지전수 실태조사특별법 제정
    - ⇒ 의견 반영 및 보완하여 보고안건 상정
  - (안건3)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 ⇒ 의견 반영 및 보완하여 보고안건 상정
  - (안건4)향후 계획 및 기타

## 3. 향후 계획

- 부처협의 진행(사무국)
- 농특위 운영위원회 상정(12.29.)
- 향후 회의개최는 본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 후 위원님들과 협의

붙임 : 회의록

## 제11차 농어업분과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회 의 명	제11차 농어업분과위원회 전체회의
주관기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정책팀
개최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4:00 ~ 17:00
개최장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 / 화상회의 병행
참석명단	박성우 사무부국장 위 원 : 재적 19명, <b>참석 16명</b> - 이숙원 분과위원장, 조병옥 위원, 최철원 위원, 박중서 위원, 박준기 위원, 윤금순 위원, 김현아 위원, 이무진 위원, 임영환 위원, 김태연 위원, 이기홍 위원, 최동근 위원, 최병문 위원, 김기흥 위원, 정은정 위원, 엄청나 위원 사무국 : 손영준 팀장, 최원준, 최수형, 김창호

### 진행순서

1. 개회 및 국민의례
2. 사무부국장 인사말씀
3. 농특위 본 위원회·분과위원회 현환 보고
4. 본 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및 토의
5. 향후계획 및 기타
6. 폐회

### 상정안건

- 전차(제10차) 회의결과 및 11차 본위원회 회의 결과 및 각소분과.TF현황 보고
- 농지 이용과 보전 관련 제도개선 방안
- 농지전수 실태조사특별법 제정
-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 향후계획 및 기타 안건

### 발언요지

#### < 인사말씀 >

- 코로나로 인해 오시기 힘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년간 노고가 많으셨고, 의안 마무리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을 적극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성우 사무부국장**)

---

< **분과위원장 인사말씀** >

- 연말연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해를 잘 마무리 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준비에 애써주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분과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림. **(이숙원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회 개시 ---

- 성원보고(**손영준 팀장**) : 19명중 현장 12명, 영상4명으로 16명 참석하여 성원

< **안건상정** >

- 안건1. 전차(제10차) 회의결과 및 11차 본위원회 회의 결과 및 각소분과.TF현황 보고
- 안건2. 농지 이용과 보전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안건3. 농지전수 실태조사특별법 제정
- 안건4.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 안건5. 향후계획 및 기타 안건

< **안건1 > 전차(제10차) 회의결과 및 11차 본위원회 회의 결과 및 각소분과.TF현황 보고**

- 전차 회의결과 및 11차 본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손영준 팀장**)
- 경영안정소분과 현황보고(**최철원 위원**)
- 농지제도개선소분과 현황보고(**조병옥 위원**)
- 축산소분과 현황보고(**최수형 전문관**)
- 친환경농업TF 현황보고(**박중서 위원**)
- 질문 건의사항
  - 농지전수조사 특별법이 소분과 차원에서 마련한것인가? 김정호 의원측에서 마련한것인가? (**최철원 위원**)
- ⇒ 농지소분과에서 회의를 통해 나온 자료를 김정호의원실과 협의하였음. 입법관련해서는 김정호 의원실과 협조 할 가능성이 많음(**임영환 위원**)
- 분과위원회에 논의해서 상정한 것이 농특위 본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회의 결정방식이 거수인지, 전원 합의에 의한 것인지 궁금함. 농식품부에 촉구안 공문을 보낸 것의 진행상황 공유 바람 (**최동근 위원**)
- ⇒ 11차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내용에 대한 기각이 아니고, 현안에 대한 농특위 농정활동을 본위원회 심의 의결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농업분야 현안은 늘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농특위 심의 의결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건은 위원장님의 정치활동이나, 기고 등으로 조치하였음.

---

부처협의로도 추진결과, 농식품부 및 기재부 모두 발의 중인 법안이 있고, 제도개선중에 있어, 추진 사항이 나오면 협의 하겠다는 내용이었음. 내년 농특위 주요 의제로 논의해서 의안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 할 계획임 **(손영준 팀장)**

-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된 것을 부처 협의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항도 이행계획 수립을 거부하는 문제는 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도에 적극적인 이런 개선 노력이 되지 않으면 농특위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준비해서 운영위에 전달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람. **(박종서 위원)**

## < 안건2 > 농지 이용과 보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조병옥 위원)

### ○ 질문 건의사항

- 경자유전이 가진 상징성 고려 필요라는 문구 보다는 명확하게 경자유전의 법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문구로 바꾸었으면 함. **(이무진 위원)**

⇒ 문구를 넣도록 하겠음 **(조병옥 위원)**

- 농지 임대차 제도 신고제 도입 관련해서 구두 계약 방식 허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내용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995년 이전의 것은 구두 계약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지? 서로가 그냥 문서화 되지 않았는데도 서로 그냥 서로 알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 법이 인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법이 다 인정된다는 건가요 **(이무진 위원)**

⇒ 구두계약도 법적으로도 인정되나, 구두계약은 생각이 만나서 등으로 변경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뭔가에 등록이 되어 하는 것이어서 관공서에 임대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서 이렇게 구두 계약을 했다고 하면 접수받아 등록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씀 **(박준기 위원)**

- 구두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95년 농지법 제정된 이후의 것은 농촌공사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인정을 안 해 주니까, 95년 이전에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임대차를 그냥 행정기관에 가면 간단한 서류로 작성을 하면 서로가 동의가 되면 그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개념 없이 모든 농지를 그냥 당사자들끼리 농지은행을 가지 않고서도 계약하는 것을 인정 해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구두 계약 방식 허용방식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95년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그냥 행정기관을 통한 그런 서면 계약도 실효성이 있게끔 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될 것 같음. **(이무진 위원)**

- 
- 농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가 아주 불명확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처음에 경자유전 원칙의 딜레마를 하면서 이 모든 논의를 협의체 구성에서 하자라고 넘기셨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농지 농용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꾸는 것이 맞는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세 가지 부분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제시를 해야 이것을 갖고 논란이 일면서 이후에 협의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아무런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협의해라고 하면 입장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상도 그렇고 이 보상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직불금처럼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상향 증액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농업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기타 부대비용을 줘야 된다는 것인지 물론 이제 다 논의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 농지 관리를 하면 문제가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자체에서 관리했을 경우 우리가 각 지역별로 어떠한 지역 유지들의 세력 관계가 형성될지 모르는데 오히려 농지 전용과 관련해서 더 수월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지자체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려고 한다면, 이 농지전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농지관리위원회가 전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어떤 명확한 책임성 규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자체로 넘기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농지가 보존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두 계약을 신고하면 이거는 서면 계약 아닌가요? 그래서 구두 계약을 신고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결국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 같음. 여러 인센티브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인센티브도 잘 어떤 건지 잘 모르겠음.

상속 농지의 세분화 개선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를 세분화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농지 세분화는 농업 생산의 규모화를 해야 되는데 세분화되어서 규모화가 진행이 잘 안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분화가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소규모 농가가 일반화돼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굳이 상속 농지의 세분화만을 막겠다는 이유가 이게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분화가 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안건으로 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김태연 위원)

---

---

⇒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견도 있어서, 이 정도로 한 것이고, 그런데 이 문구가 약간 수정이 돼야 된다 이 부분적으로 수정을 윤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김대현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상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

진흥지역 보상과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진 못했으며 내부 논의를 추가로 하겠음.

지자체 내에 여기 농지관리위원회를 보면은 이 더 수월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논의가 되는 거기까지는 검토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의견도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보험 세분화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지만 하나하나의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것도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추가 내용을 좀 추가를 해서 이 설득력이 있게끔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 **(조병욱 위원)**

- 상속농지 세분화 관련해서는 상속농지만으로 이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주말 농장이나 농지를 투기하는 방식이 세분화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근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단순히 상속 농지의 세분화로만 하지 말고 농지 세분화와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그것이 실제 이 세분화를 통한 투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세분화 관련해서는 보시면 좀 더 의제로 하기는 편할 것 같기도 함.

진흥지역 제도개산과 관련해서 진흥지역 우대 지원과 관련된 부분 전체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하는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 국가 관리나 국가 관리이기도 하지만 사적 영역의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로서 보존되게 하는 방식을 미국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단위 평균 지역의 지지대가 상승한 것만큼 실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그것이 농지로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직불금만의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별도로 향후에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 농지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없어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농지로 유지했을 때 진흥지역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지를 유지했을 때 사회적으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와 보상이 지급이 돼야 한다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여기서는 우대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단순히 직불금 정도로만 다루지 말았으면 함. **(이무진 위원)**

- 농지관리기구 관련해서 헌법에도 경자유전이 있고 전용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규

---

제 중심의 어떤 행정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거래되는 농지를 농지거래소 같은걸 설치해서 전반적인 국가무로 농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가 제 의견임. 국가적으로 농지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심지어 계약이라든가 전용까지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기구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거래와 관련된 것을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 취득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 한 장으로 가름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전반적인 행정 체계를 통한 관리 운영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임.

현재 지자체에서도 관리위원회를 두지만 실질적으로 농지 관련된 주 사무가 행정에서도 하고있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농어촌공사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농어촌공사 자체도 지금 현재 한계도 있고 개선의 과제들이 있지만, 현재 있는 기구나 조직을 잘 개편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지 위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봄 **(최철원 위원)**

- 농지 보존 부담금 제도개선 관련해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수준으로 받는 것을 농지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겠다고 하셨는데 동의하며, 100분의 50보다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부담금과 기금을 할 때는 최후 분양을 받는 사람 혹은 최후의 그걸 쓰는 기업 대상들이 이 부담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올릴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견지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농지의 필요성과 농지 보존과 발전 유지하고자 하는 굉장히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30%는 작았다고 생각이 솔직히 듭.

지금 현재 30%는 굉장히 제 느낌에는 거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히셔도 될 것이라 의견 드림 **(김현아 위원)**

- 농지법 개정안 관련해서 국토계획법이나 국토기본법의 개정안을 냈었는데 부결되었고, 국토기본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이미 농지 이용계획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 뒤에 내용이 나와 있는 농지법 개정과 국토계획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이건 저희들만의 주장인 것 같다.

이후에 부처랑 협의를 할 때도 국토교통부나 기재부랑 협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농지법상으로 농지이용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돼 있음, 실제로 이게 왜 안 만들어지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토관리 계획하고, 농지이용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걸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농지이용계획이 전혀 의미가 없다면, 농지법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를 농업쪽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어 고민이 필요함 **(최동근 위원)**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시에 농사용 창고, 축사 등 농업에 필요한 시설에도 부과하는데 농업용과 비농업용 등으로 목적에따라 구분해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

< 안건3 > 농지전수 실태조사특별법 제정 (임영환 위원)

○ 질문 건의사항

- 농특위가 특별법의 제정에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는 박수를 드리는 거구요. 이재명 후보가 당하고 협의를 할 때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농지법을 당론으로 결정해라라고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론으로 결정을 못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국회의원들부터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실연과 확인했을 때 최소한 2~30% 정도는 확인이 된 거구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이 기회에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 농지를 투기화하는 방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농지가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이 협의의 주체로 농특위가 나섰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요.

그런데 진행된 게 없거든요. 농특위의 역할이 이런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그 협의된 내용들을 정책화하고 의제화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임. **(이무진 위원)**

- ⇒ 이제 특별법 초안이 나온 상황임. 어제 토론회에서 그동안 농식품부와 여러 가지 전수 실태조사에 대해 몇 가지 제기해 온 것이 있었는데, 예산과 인력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는 위법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장 반발로 이게 시행이 가능하겠냐, 세 번째는 현재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개선했고 농지 원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일정하게 다 정리했는데, 전수 실태 조사가 필요없다는 것인데, 이걸을 잘 좁히는 논의가 앞으로 후속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영준 팀장)**

- 이 법이 지정하고 선정이 좀 혼동에서 사용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함. 정의에서 공공기관은 각급 유치원법 고등교육법 대학을 아마 염두에 두고 그 학교를 쓰신 것 같은데 철조에서 나오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공공기관이 왜 정의되고 공공기관이 계속 나오는지 이해가 안됨.

이법이 한시법인지 상설법인지 명확하지 않음. 부칙으로 봐서는 5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농지 이용 실태조사가 5년 동안 해서 한 번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했을 때 단초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상시 지속적 관리를 하려면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실행기구로 농어촌공사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법에 그냥 구체적으로 지정 기관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다른 이견 없이 바로 집행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임.

상설법으로 된다면 사실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소유 이용뿐만 아니라 농지를 대상으로는 농가별 소득, 토지 영양실태 조사 등 조사할 내용들이 굉장히 폭넓게 있을 수 있는데 이용과 소유와 유용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예산 낭비 요소가 있어, 다양한 조사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함.

별칙 조항을 뺐는데 아예 별칙 조항을 넣어서 몇 년간 유예한다 고 적시하는 것도 여러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함. **(최철원 위원)**

⇒ 한시법으로 했는가 하면 전격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전수조사위원회라고 구성하고, 법령 재개정이 있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확보된 전수조사 내용들을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법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 그랬던 것이고, 상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임,

별칙 규정에 대한 예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유예 규정을 두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과 실행기구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게 동의함 **(임영환 위원)**

- 조사종사자에 농민이나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을 구체화 하는 것이 좋을듯하며, 여성 농민의 비율을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임. 이 정도 하려고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보고를 국회에 하므로 법령 재개정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 조직 경직화 우려를 방지 할수 있음 **(최철원 위원)**
- 법률을 한시적으로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땅을 투기하고 있는 사람 행정처분을 두려워하지 않음. 과태료보다 향후 이익이 클 것으로 보는 것인데, 행정처분으로 정리 안되는 농지는 이 법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임. **(이무진 위원)**

#### < 안건4 >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박중서 위원)

##### ○ 질문 건의사항

- 친환경 자조금 관련해서 이중납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문제는 어찌 되고 있는가? **(이무진 위원)**
- ⇒ 자조금은 14개가 의무 자조금이고 내년 2개가 더 생길 예정임, 농가입장에서는 2~3종의 부담이고, 친환경과의 마찰로 보는데 그것은 아님, 자조금은 해당품목 별로 내는 것인데, 다품목 소량생산을 하다보니 그렇게 인식 된 것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한 사항임. **(최동근 위원)**
- 환경 친화형 공공 소비 확대에서 학교 급식이 빠질 수가 없는데 어제 벌써 공정위에서 이게 불공평하다고 나왔잖아요. 군대 급식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까지도 이렇게 들어왔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능특위 차원에서, 왜 방향을 꺾느냐라고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

들었어요. 책임소비를 위한 기반 조성에서 생명조합원 500만 달성은, 생산자들이 받쳐주지 않는데 친환경 농업을 해서 다 생협의 어떤 생산이나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협간 협업도 안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책임지지 않는데 500만 만든다고 해서 생산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친환경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 우려가 있음. **(정은정 위원)**

⇒ 공정위의 입장은 문제인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부와 사회단체도 반박 성명을 내고 있음. **(박중서 위원)**

- 전과정 접근법이라고 했는데, 비축이 빠진 것 같음. 기후 위기로 점점 친환경 농산물도 생산량의 등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게 되고 이랬을 때 급식 같은 것도 그렇고 갑자기 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이랬을 때 비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음. 인증제의 법제도 개선에서 여성들의 역할이나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인증을 통해서 굉장히 지위가 역할도 줄어들고 하락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친환경 농업 등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됨  
법 제도를 개선한다면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증제에서 강력하게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농업환경위원회를 하면 중앙에만 하려고 한 얘기하는 건지, 지역 단위까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윤금순 위원)**

- 규제철폐학회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나, 실제로 그거에 반하는 지금 현재 제도들이 있음. 지역 인재 육성 같은 경우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면 대구 지역은 취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에는 취직해도 가점이 없음.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그 재원을 활용했고 그 재원을 거기에 뿌리 박으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인데, 사실상 이걸 휴먼 캐피탈 차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차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제도이지만 몰라서 그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우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 친환경의 경우, 당연히 전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면 좋고, 경제 논리로는 맞지만 로컬푸드를 쓰게 하는 여러 가지 취지들이 있음. 지역의 신선한 야채를 먹어야 되는 우선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지역 아동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반대 논리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진행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듬 **(김현아 위원)**

- 이것으로 본위원회 상정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의 검토와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보완하고 상정하는 걸로 하겠음. 사무국과 해당 소분과에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람. **(이숙원 분과위원장)**

## < 안건5 > 향후계획 및 기타 안건

---

### **【향후일정 설명(손영준 팀장)】**

- 부처협의 (~24일)
- 12.29(수) 14시. 농특위 운영위원회 : 상정 안건 최종 검토
  - \* **안건설명 : 분과위원장님 또는 각 소분과 위원중 1명**
- 22년 1.18(화) : 농특위 본 위원회
- 22년 1월 또는 2월 :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 22년 1월 또는 2월 : 농특위 운영위원회
- 22년 2월말 : 농특위 본 위원회
- 22년 농특위 논의 과제 74건 접수 및 심의 중(손영준 팀장)

#### **< 건의사항 >**

- 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부결시킨 것은 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니, 미리 이메일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면 함. (최동근 위원)
- ⇒ 당초 안건 설명회를 계획 하였으나, 사정상 취소되었으며, 12.29일 운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안건 설명을 하여, 의견을 걸러내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손영준 팀장)

#### **< 마침 말씀 >**

- 장시간 토의해주신 농어업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분과위 활동을 기대함. (이숙원 분과위원장)

---

#### **결정사항**

- 농지 이용과 보전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위원의견 반영 후 심의안건 상정**
  - 농지전수 실태조사특별법 제정 : **위원의견 반영 후 보고안건 상정**
  -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 **위원의견 반영 후 보고안건 상정**
-